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도 폭염 속에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 일수나 하루 근무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 당시 기온이나 작업환경, 작업의 내용 등도 고려한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잠시 일을 멈추도록 하자.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 기온이 낮은 아침에 일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자칫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더위 사망’ 중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한 연구 조사에서는 평균 기온이 30℃를 넘으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36도에 이르면 무려 그 수가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해 온 것은 신체조건에 비해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05구합42443).

또 제대로 된 냉방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대체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편이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던 경우라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2006구합38144).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줬다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2003가단27284).

이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로서는 열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 복사열을 차단할 지붕 등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7가합682).

올 초 “뇌경색과 더위와의 관계도 밝혀진 바도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의사의 의견에 따라 연관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2006구단9590).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과 달리 “의학적으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다가 고혈압, 호흡곤란 등 일사병 증세를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07구합19478).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했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책임자 등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다(2007가합682). ♪

출처 : 법률신문